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4)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유기한 보호자의 책임과 유기된 반려견 분양의 가부

한 두 환

법무법인 송파

변호사

lawvet@naver.com



김명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명의동물병원]에 어느 날 이무전씨가 내원하여 자신의 강아지 순돌이의 수술을 맡겼다. 김명의 수의사는 파텔라 수술을 한 후 1주일간 입원시키기로 하였고, 수술비는 100만원, 입원비는 일당 20만원씩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무전씨는 순돌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김명의 수의사가 재촉하면 이무전씨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는 답변만 하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최근엔 연락도 두절되었다. 그 사이에도 순돌이의 입원에 따른 관리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김명의 수의사로서도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3개월 즈음이 지나자 김명의 수의사는 내심 이무전씨가 순돌이를 [명의동물병원]에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마침 [명의동물병원]의 단골 보호자인 박견주씨가 [명의동물병원]에 왔다가 순돌이를 예뻐하자,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를 박견주씨에게 무료로 분양해주었다.

그렇게 6개월 즈음이 지난 후 이무전씨가 진료비를 지급할 테니 순돌이를 돌려달라고 나타났다.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를 이미 박견주씨에게 분양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순돌이에 대해 이무전씨와 박견주씨 모두 자신의 반려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돌이는 이무전씨와 박견주씨 중 누구의 반려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무전씨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동물병원에 반려견, 반려묘 등의 진료를 맡기고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경우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지급명령 등을 통해 반려견을 데려가게 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제3회 칼럼 참조).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와 같이 순돌이를 박견주씨에게 분양한 경우는 김명의 수의사, 이무전씨, 박견주씨 사이의 각각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까? 우선 순돌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사안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순돌이는 누구의 반려견일까?

우선 반려견은 보호자와 정서적 교감을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모든 대상을 '사람'과 '물건'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무전씨는 순돌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무전씨가 여전히 순돌이의 소유권을 갖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이무전씨는 순돌이를 [명의동물병원]에 유기함으로써 순돌이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순돌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이무전씨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무전씨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정황에 의해 묵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무전씨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무전씨로부터 순돌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는 한, 이무전씨의 순돌이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순돌이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무전씨에게 있다.

그리고 이무전씨에게 소유권이 있는 한, 이무전씨는 박견주씨에게 순돌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순돌이를 찾기 위해 이무전씨가 부담해야 할 사항

이무전씨에게 순돌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무전씨는 한동안 순돌이를 유기하였으므로 순돌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담이 따른다.

가. 박견주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박견주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순돌이를 정성껏 돌봤다. 박견주씨는 순돌이를 기르는 데 사료 등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이고, 박견주씨의 노동력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는 이무전씨의 입장에서는 이무전씨가 제3자를 고용하여 순돌이를 돌봐주도록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무전씨는 순돌이를 기르는 데 들인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과 돌보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지불할 임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견주씨는 이무전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김명의 수의사에 대한 진료비지급

이무전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겠으니 순돌이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가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선 당초 계약이 된 수술비 100만원과 1주일의 입원비 140만원은 진료비로서 당연히 인정된다. 더불어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를 관리한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김명의 수의사가 순돌이를 관리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1일당 20만원이었던 입원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은 이무전씨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무전씨와 같이 장기간 반려동물을 유기한 후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제3회 칼럼 참조)

김명의 수의사가 박견주씨에게 분양해준 것의 효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돌이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무전씨에게 있었고, 김명의 수의사는 이무전씨의 순돌이를 박견주씨에게 분양해 준 것이다. 분양은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우리 법률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인정한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는 이무전씨로부터 순돌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박견주씨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

다만 김명의 수의사가 이무전씨로부터 순돌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박견주씨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는 “전조(569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박견주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분양받을 때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무료로 분양받은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박견주씨가 순돌이를 분양받았을 때에 순돌이가 원래 이무전씨의 반려견임을 몰랐다면, 박견주씨는 정들었던 순돌이를 이무전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김명의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박견주씨도 순돌이가 원래 이무전씨의 반려견임을 알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다.

사전 계약서 작성

김명의 수의사와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보호자로부터 환자를 입원을 받을 때에 입원동의서 등에 “치료 종료를 고지한 후 1달이 경과하기까지 환자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환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이 입원동의서에 포함되는 경우, 사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 보호자의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담당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진료비와 그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유기동물로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누구든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